

[별첨2]

지원자력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 교육경력 가. 사관학교의 교관(조교수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나. 학력인정을 받는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단, 한 학기 합산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는 70% 인정, 6~8시간은 50% 인정, 5시간 이하는 30% 인정)	100 100 30 ~ 70
2. 연구경력 가. 최종학위 취득자 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② 석사학위 과정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한 연구경력 다. 연구소육성법, 벤처기업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석사과정 재학년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100 100
3. 산업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100